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설자	성명(법인명)	① 종류							
	의료기관 명칭	연락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② 요양기관 기호								
이관	휴·폐업 구분	[] 휴업 [] 폐업							
	휴·폐업 (예정)일	년 월 일							
	이관 요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의료기관 사용 EMR 제품명	01. 의사량		[]		02. 비트U차트		[]	
		03. 이플러스		[]		04. 차트매니저		[]	
		05. 이지스전자차트		[]		06. 닉스전자차트		[]	
		07. 닥터스		[]		08. 기타 []		[]	
진료기록 유형 및 보유량 (중복 체크 가능)	01. 전자	[]	02. 지류	[]	03. 영상	[]			
		GB		부		GB			
※ 전자 및 영상정보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업체에 연락하여 용량 확인 문의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환자명부
------	-----------------------------------

작성 방법

-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치과병원 04 한방병원 05 요양병원([]일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 정신병원 07 의원 08 치과의원 09 한의원 10 조산원
-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의 사항

1.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 전 이관신청서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료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법」 제92조)

처리 절차

